

□ 이전지역인재 상세내역

1. 지역인재 개념

- (정의) 최종학력(대학원 이상 제외) 기준 경상남도, 울산광역시 소재 학교 졸업(예정)자
 -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(예정)인 자는 제외
 -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 대학에 재학(휴학)중인(졸업예정자 제외) 자는 포함

※ 대학 졸업예정자의 범위 : '27. 2월까지 졸업예정인 자에 한하여 인정하며, 4년(4년제의 경우 4년=8학기, 5년제의 경우 5년=10학기, 전문대학의 경우 2년=4학기)이상 등록하고, 최종학기 수강신청학점을 포함해서 졸업학점에 도달된 자로서, 재학 중인 학교의 학칙에 따라 졸업예정자로 인정되어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야 하고, 공사에서 요구하는 시점에 제출 할 수 있어야 함.

※ 이전지역 : 본사 이전지역인 경상남도, 울산광역시를 말하며 부산광역시를 제외함.

2. 이전지역 대학의 범위 : 본사 이전지역에 소재한 아래의 학교(이전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운영지침에 따름)

- ①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하며,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대학, 산업대학, 교육대학, 전문대학, 원격대학(사이버대학은 제외), 기술대학, 각종학교 등의 본교
 - *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역대학은 이전지역 학교에 포함
 - ② 「고등교육법」 제24조에 따른 분교 및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지방캠퍼스(이원화 캠퍼스)
 - * 본교와 다른 이전지역에 분교 및 이원화 캠퍼스가 위치한 경우, 해당 캠퍼스가 위치한 시·도의 지역인재로 포함되며, 이 경우 이전지역에서 대학교를 졸업, 졸업예정인 것으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
 - ** 이전지역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이원화 캠퍼스 중 본교가 이전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이원화 캠퍼스도 본교가 위치한 시·도의 지역인재로 포함
 - ③ 「울산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, 「광주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, 「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「한국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
 - ④ 특별법으로 설치된 다음 학교는 졸업 후 임용이 보장되고 일정기간 복무의무를 지며 국고에서 학비를 부담하므로 소재지에 관계없이 제외
 - ㉠ 「경찰대학 설치법」에 의한 경찰대학(경기)
 - ㉡ 「사관학교 설치법」에 의한 육·해·공군사관학교(서울·경남·충북)
 - ㉢ 「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」에 의한 국군간호사관학교(대전)
 - ㉣ 「육군3사관학교 설치법」에 의한 육군 제3사관학교(경북)
 - ⑤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·고등기술학교
 - ※ 외국학교 및 지방에 있는 외국학교의 분교는 제외

3. 이전지역인재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의 범위(이전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운영지침에 따름)

(1) 다음의 이전지역대학 졸업(예정)자

- ㉠ 이전지역에 위치한 『고등교육법』상의 학교와 과학기술 대학을 졸업한 경우
- 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경우 이전지역에 위치한 소정의 학교에서 전 기간을 수강하고 졸업한 경우

(2) 이전 지역인재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아래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 또는 열거된 학력을 보유한 사람은 해당 학력을 제외한 최종 학력이 이전지역 학교일 경우

- ㉓ 「고등교육법」, 특별법 등 교육관계 법령에 규정된 대학원
- ㉔ 「고등교육법」에 규정된 사이버대학
- ㉕ 「평생교육법」에 규정된 평생교육기관
- ㉖ 「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」제6조에 의한 독학학위 취득자
- ㉗ 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제9조에 의한 학위 취득자

(3) 학교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

- ㉘ 수도권 소재 학교 및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소재 학교가 이전지역으로 이전한 경우, 이전하는 시점 이전 졸업자는 이전 지역인재에서 제외
- ㉙ 지방소재 학교가 수도권으로 이전하였거나 이전지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, 이전하는 시점 이후 입학자는 수도권 또는 이전지역 밖의 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것으로 보아 이전 지역인재에서 제외

< 예 시 >

<본교의 위치와 분교·지방캠퍼스의 위치가 다른 경우>

- 본교가 수도권에 위치하고, 분교·지방캠퍼스가 지방에 위치한 경우 :
분교·지방캠퍼스는 지역인재에 해당

- 본교가 지방에 위치하고, 분교·지방캠퍼스가 다른 지방에 위치한 경우 :
분교·지방캠퍼스는 해당 캠퍼스가 위치한 곳의 지역인재에 해당

*** 부산대 본교는 부산에 위치, 지방캠퍼스인 양산캠퍼스의 경우 경남에 위치하므로, 본교 학생은 부산, 양산캠퍼스 학생은 경남의 지역인재에 해당**

<이전지역 대학교와 타 지역 대학교를 모두 졸업한 경우>

- 이전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서울 소재 대학 졸업 : 해당
- 타 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이전지역 대학 졸업(예정) : 해당

<대학 졸업 후 다른 대학에 재학중인 경우>

- 이전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타 지역 대학에 편·입학하여 재학중 : 해당
 - 타 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이전지역 대학에 편·입학하여 재학중 : 비해당
- ※ 다만, 이전지역 대학에 편·입학하여 졸업한 후에는 이전지역 인재에 해당

<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수강지역대학을 변경한 경우>

- 타 지역 대학에서 수강하다가 이전지역 대학으로 수강지역 변경 : 비해당
- 이전지역 대학에서 수강하다가 타 지역 대학으로 수강지역 변경 : 비해당

<대학 중퇴 후 다른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>

- 이전지역 대학 중퇴 후 다시 타 지역 대학에 편·입학하여 재학중 : 비해당
 - 타 지역 대학 중퇴 후 다시 이전지역 대학에 편·입학하여 재학중 : 비해당
- ※ 다만, 이전지역 대학에 편·입학하여 졸업한 후에는 이전지역 인재에 해당

<경찰대학·사관학교를 중퇴한 경우>

- 이전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경찰대학·사관학교 중퇴자 : 해당
- 타 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경찰대학·사관학교 중퇴자 : 비해당

<대학 졸업 후 대학원을 재학 또는 졸업한 경우>

- 이전지역 대학 졸업 후 타지역 소재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: 해당
- 타 지역 소재 대학 졸업 후 이전지역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: 비해당

□ 지역균형인재 상세내역

1. 지역균형인재의 범위

- 지역균형인재 : 학위과정 유형(학사, 석사, 박사)을 불문하고 지방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지방대학에서 학위를 수여받은 자
-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자는 **지역균형인재에 포함되지 않음**

2. 지방대학의 판단

가. **(지방대학의 판단)**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(**원격 대학 및 각종학교 제외**)

- ①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, 산업대학, 교육대학, 전문대학, 기술대학의 **본교**
- ②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「고등교육법」 제24조에 따른 **분교**
 - ※ **(25년 기준 분교) 건국대(글로벌), 고려대(세종), 동국대(WSE), 연세대(미래), 한양대(ERICA)**
 - ※ 교지분리대학(이원화 캠퍼스)은 분교와 달리 본교와 분리된 별도의 대학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본교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방대학 여부를 판단

예 시

- ㉞ **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**: 지방대학에 해당함
 -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는 「고등교육법」 제24조 상의 분교
- ㉟ **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**: 지방대학에 해당하지 않음
 -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는 분교가 아닌 교지분리대학이므로 본교와 별도의 대학으로 볼 수 없음. 본교 소재지(경기도)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지방대학에 해당하지 않음

- ③ 개별법에 따라 설치된 다음의 고등교육기관은 **지방대학에 해당하지 않음**

개별법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

- ㉠ 「울산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
- ㉡ 「광주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
- ㉢ 「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
- ㉣ 「한국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
- ㉤ 「경찰대학 설치법」에 따른 경찰대학
- ㉥ 「사관학교 설치법」에 따른 육·해·공군사관학교
- ㉦ 「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」에 따른 국군간호사관학교
- ㉧ 「육군3사관학교 설치법」에 따른 육군 제3사관학교
- ㉨ 「국방대학교 설치법」에 따른 국방대학교
- ㉩ 「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」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
- ㉪ 「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」에 따른 한국농수산대학교
- ㉫ 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에 따른 폴리텍대학 등

- ④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**원격대학**(방송통신대학, 사이버대학) 및 **각종학교**(한국예술종합학교, 순복음총회신학대)는 **지방대학에 해당하지 않음**

※ **한국방송통신대학의 지방 소재 지역대학은 지방대학에 해당하지 않음에 유의**

나. **(권역 구분)** 권역 구분 없이 수도권(서울, 경기, 인천)을 제외한 지역 대학 졸업(예정)자 채용 시 지역인재 채용으로 인정

※(예) 전남 소재 공공기관이 경북 소재 대학 졸업(예정)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채용건을 지역균형인재 채용으로 인정